

교류협력 협약서

대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장애학생지원센터)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이하 대구직능원)은 장애 대학생들의 직업역량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진입 기회를 넓혀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애학생지원센터와 대구직능원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장애 대학생의 역량을 강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 범위)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장애 대학생의 역량 강화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애 대학생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3. 양 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제3조(운영) 본 협약서에서 규정한 협력 내용의 효율적 추진과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4조(효력 및 유효기간)

1.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협약 해지의 통보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씩 자동 연장한다.

제5조(신의성실)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한다.


제6조(비밀 유지) 각 기관은 상호 협력 과정에서 취득하였거나 인지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공개, 누설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6월 20일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이 동 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김 대 환

이 동 석

김 대 환